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7
----------	------

발의연월일 : 2020. 7. 3.

발의자 : 조명희 · 권은희 · 이태규  
허은아 · 변재일 · 김영식  
정희용 · 양금희 · 金炳旭  
류성걸 · 윤두현 · 김희국  
홍준표 · 정동만 · 김형동  
배현진 · 한무경 · 윤영석  
서일준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편익,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야 함.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국가적 미래 난제 해결이 요원한 현실임.

특히 미래 유망 기술이거나 인류에 공헌하고, 국위를 선양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및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함. 하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단기성과 중심의 기준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

음.

또한 세계적·획기적 기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연구 지원체계 정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래유망 과학분야 육성 등 기초연구 지원 체계의 혁신적인 재정립이 필요함.

따라서 기초과학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 등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12조 및 제13조의2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의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제12조 중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          ③ · ④ (생략)</p> <p>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u>공동사업</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u>&lt;신설&gt;</u></p>	<p>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의 운영 계획과 재원확보방안</u></p> <p>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          -----          -----          -----  <u>공동사업</u>, <u>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u>-          -----          -----.</p> <p><u>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u>  <u>정부는 미래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